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계 제조번호를 표시하는 것 등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259호, 2021. 6. 15.)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실태조사 주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 안 제1조의4 신설)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나. 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동력수확기의 ‘농업기계 범위’란 자구 수정(시행규칙 안 제1조의2 [별표 1] 개정)
-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 (시행규칙 안 제19조의6제2항 [별표 16] 1. 일반기준 개정)

* 위반행위 횟수별 처분기준 적용일 및 가중처분 적용차수 기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부처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기계의 이용실태
2. 벼 및 밭작물의 기계화율
3. 그 밖의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기
2. 농업용트랙터
3. 관리기
4. 이앙기
5. 콤바인
6. 곡물건조기
7. 농산물건조기

8. 스피드스프레이어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제29호가목 중 “수집형 수확기계”를 “기계”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시금치”를 “시금치, 배추”로, “하는 기계”를 “기계”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하는 기계”를 “기계”로 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전단 중 “처분을”을 “행정처분을”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을 “기간의 계산”으로, “처분을 한”을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후에”를 “후 다시”로, “다시 적발된 날”을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4(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u> <u>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u> <u>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u> <u>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u> <u>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u> <u>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주요 농업기계의 이용실태</u> <u>2. 벼 및 밭작물의 기계화율</u> <u>3. 그 밖의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u> <u>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u> <u>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실태조사는 현지설문조사를 원</u> <u>칙으로 한다.</u> <u>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용실태</u> <u>조사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u> <u>와 같다.</u> <u>1. 경운기</u> <u>2. 트랙터</u> <u>3. 관리기</u> <u>4. 이앙기</u> <u>5. 콤바인</u> <u>6. 곡물건조기</u> <u>7. 농산물건조기</u> <u>8. 스피드스프레이어</u> <u>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u>

	<u>정하는 농업기계</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u> <u>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u> <u>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u> <u>이 정한다.</u>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 (제1조의2 관련) <table> <tr> <th>농업기계명</th><th>범위</th></tr> <tr> <td>29. 동 력 수확기</td><td>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밭(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u>수집형 수확기계</u> 나. 엽채류수확기: <u>부추, 시금치 등 엽채류를 절단하여 수집하는 하는 기계</u>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여 <u>수집하는 하는 기계</u>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예취 및 절단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td></tr> </table>	농업기계명	범위	29. 동 력 수확기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밭(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u>수집형 수확기계</u> 나. 엽채류수확기: <u>부추, 시금치 등 엽채류를 절단하여 수집하는 하는 기계</u>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여 <u>수집하는 하는 기계</u>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예취 및 절단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 (제1조의2 관련) <table> <tr> <th>농업기계명</th><th>범위</th></tr> <tr> <td>29. 동 력 수확기</td><td>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밭(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u>기계</u> 나. 엽채류수확기: <u>부추, 시금치, 배추 등 엽채류를 절단하여 수집하는 기계</u>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여 <u>수집하는 기계</u>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예취 및 절단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td></tr> </table>	농업기계명	범위	29. 동 력 수확기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밭(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u>기계</u> 나. 엽채류수확기: <u>부추, 시금치, 배추 등 엽채류를 절단하여 수집하는 기계</u>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여 <u>수집하는 기계</u>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예취 및 절단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농업기계명	범위								
29. 동 력 수확기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밭(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u>수집형 수확기계</u> 나. 엽채류수확기: <u>부추, 시금치 등 엽채류를 절단하여 수집하는 하는 기계</u>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여 <u>수집하는 하는 기계</u>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예취 및 절단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농업기계명	범위								
29. 동 력 수확기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밭(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u>기계</u> 나. 엽채류수확기: <u>부추, 시금치, 배추 등 엽채류를 절단하여 수집하는 기계</u>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여 <u>수집하는 기계</u>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예취 및 절단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별표 16]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 ----- <u>처분을</u> ----- <u>. 이 경우 위반횟수별</u> <u>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u> <u>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u> <u>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u> <u>날로 한다.</u>	[별표 16]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 <u>행정처분을</u> ----- <u>.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u> <u>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u> <u>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u> <u>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